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92호 2020. 10. 15.(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33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 1
- 사천시 고시 제339호 향촌2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 고시 ----- 2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1247호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 10
- 사천시 공고 제1254호 먹는물공동시설(중탑·봉명산약수터) 폐쇄 안내 공고 ----- 19
-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공고 제24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1244호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1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사천시 고시 제2020-33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10. 15.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변경승인번호 : 제2020 - 13호
2. 점용·사용 변경승인 연월일 : 2020년 10월 28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해안둘레길 조성으로 볼거리 및 편익시설 제공
4. 점용·사용의 장소
 - 사천시 대방동 759번지선 공유수면
5. 점용·사용의 면적(변경)
 - 당초 : 1,532㎡
 - 변경 : 1,362㎡
6. 점용·사용의 기간 : 2020년 9월 9일 ~ 2050년 9월 8일(30년간)
7.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사천시장(관광진흥과장)
 - 나.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 천 시 공 보

제 692 호

사천시 고시 제2020-339호

향촌2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20-256호(2020. 7. 16.)로 산업단지계획(변경) 고시된 “향촌2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사 천 시 장

1. 산업단지 개요

가. 명 칭: 향촌2 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경상남도 사천시 사등동 산34번지 앞 공유수면 일원

다. 면 적: 68,661㎡

라. 조성목적

- 사천시 관내 해안주변에 산재되어있는 소형 수리조선소 등으로 인하여 도시주거환경 저해 및 기름 유출로 인하여 해양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소규모 영세 수리조선소 등을 한 장소로 집단화하여 경쟁력 제고
-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환경 보존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 및 향후 사천 바다케이블카 운행 시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함과 동시에 한려수도 해상국립공원 주변 해양환경 보존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사 천 시 공 보

제 692 호

마. 개발기간: 2016. 7. 28. ~ 2020. 12. 31.

바. 시 행 자: 사천시장

사. 관리기관: 사천시

아. 추진경위

- 2016. 07. 28.: 산업단지계획 수립 고시(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 2016. 07. 28.: 산업단지계획 수립 고시(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 2017. 08. 31.: 산업단지계획(변경) 수립 고시(사천시 고시 제2017-153호)
- 2018. 12. 13.: 산업단지계획(변경) 수립 고시(사천시 고시 제2018-251호)
- 2020. 06. 25.: 산업단지계획(변경) 수립 고시(사천시 고시 제2020-218호)
- 2020. 07. 16.: 산업단지계획(변경) 수립 고시(사천시 고시 제2020-256호)
- 2020. 12월 : 사업 준공 예정

자. 입지여건

시설명	현 재	확충계획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국도77호선(남일로)에서 국지도로 접근가능	~ 2020년	진입도로 : L=775m, B=14m	사천시
철 도	진주역 이용	-	-	-
공 항	사천공항 이용 가능	-	-	-
용 수	-	~ 2020년	•소요 용수량 : 153m ³ /일	사천시
전 력	-	~ 2020년	•4,033MWh/년	한국전력 공사
오·폐 수 처 리	사천일반산업단지폐수중 말처리장 가동 중	-	•오수발생량 : 134m ³ /일 (삼천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통합처리)	사천시
폐기물 처 리	-	-	•생활계 및 배출시설계, 지정폐 기물 발생량 : 30,660톤/년	전문 처리업체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방향

- 1) 목 표 : 합리적인 업종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 2) 추진방향 : 입주 기업 적극 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 관리업무의 전문화

나.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 1) 입주대상 업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1)
- 2)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정하는 입주대상 업종 기업

3) 입주 우선순위

가) “향촌2 일반산업단지계획[사천시 고시 제2020-256호(2020. 7. 26.)]에 따른 입주예정기업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다) 상기 대상 기업 이외 기업

※ 우선순위는 필지 경합시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동일순위일 경우 연접하여 신청 면적이 많은 업체, 최종 동일순위일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

- 4) 입주절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다. 산업단지의 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1) 용도별 구역계획

(단위 : m², %)

구 분	총 면적	산업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면 적	68,661	43,803	23,305	1,553
구성비	100.0	63.8	33.9	2.3

사 천 시 공 보

제 692 호

2) 용도별 구역계획도 : 별첨 1

라.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1) 배치기준

- 주변 환경 및 산업단지 내 생산환경 측면을 고려한 배치
-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배치

2) 업종별 배치계획

구 분		업 종	배치계획		비 고
			업체수	면적	
계		-	6	43,803	
산업시설구역	산업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1	8,155	
	산업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1	9,143	
	산업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1	10,894	
	산업1-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1	5,112	
	산업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1	6,815	
	산업1-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1	3,684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마.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바. 그 밖에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용지

구역	구 분		계획내용
산업 1-1 ~ 산업 1-6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공장 부대시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배 치	건축배치지양구간에는 통경축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 배치 지양(권고)
	높이	최고 한도	-
		최저 한도	-
		색 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강조색 (제한없음)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 주차장용지

구역	구분	계획내용	
산업 1-1 ~ 산업 1-6	용도	허용용도 주차장법 및 사천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 주차전용건물일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고,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 별표1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을 허용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배치	-	
	높이	최고 한도	-
		최저 한도	-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3) 환경관리

-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 허용 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한 지방 환경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휴식, 운동 공간 등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 관리기관은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이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사 천 시 공 보

제 692 호

4)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관계기관과 협조체제 및 재해복구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방재계획과 관련하여 안전, 공해, 환경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입주 기업에 지시할 수 있으며, 입주 기업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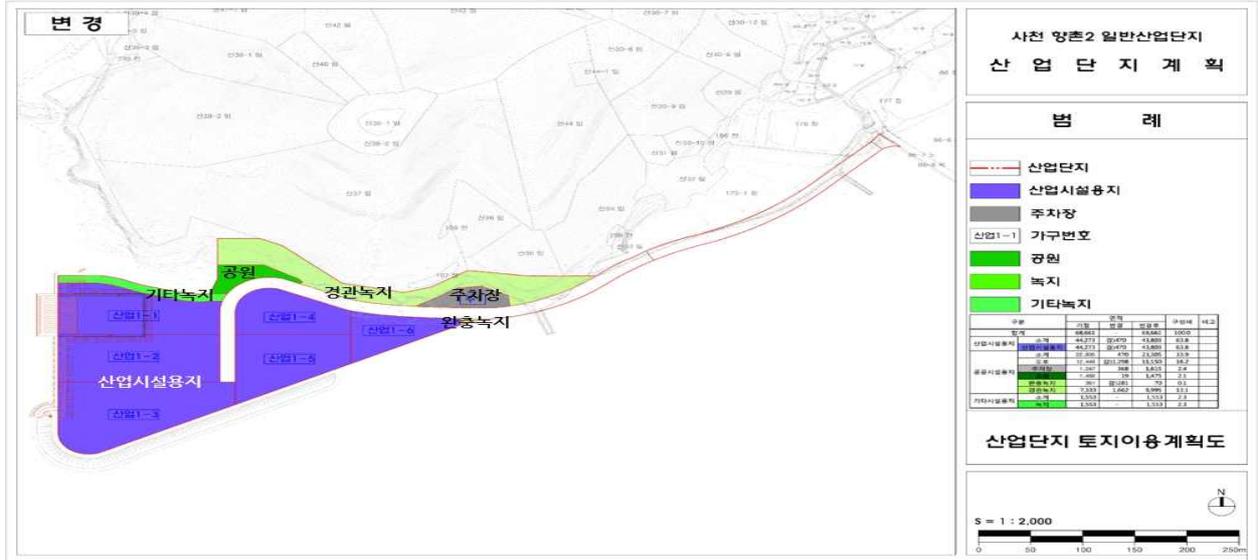
5) 기반시설지원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등 기반 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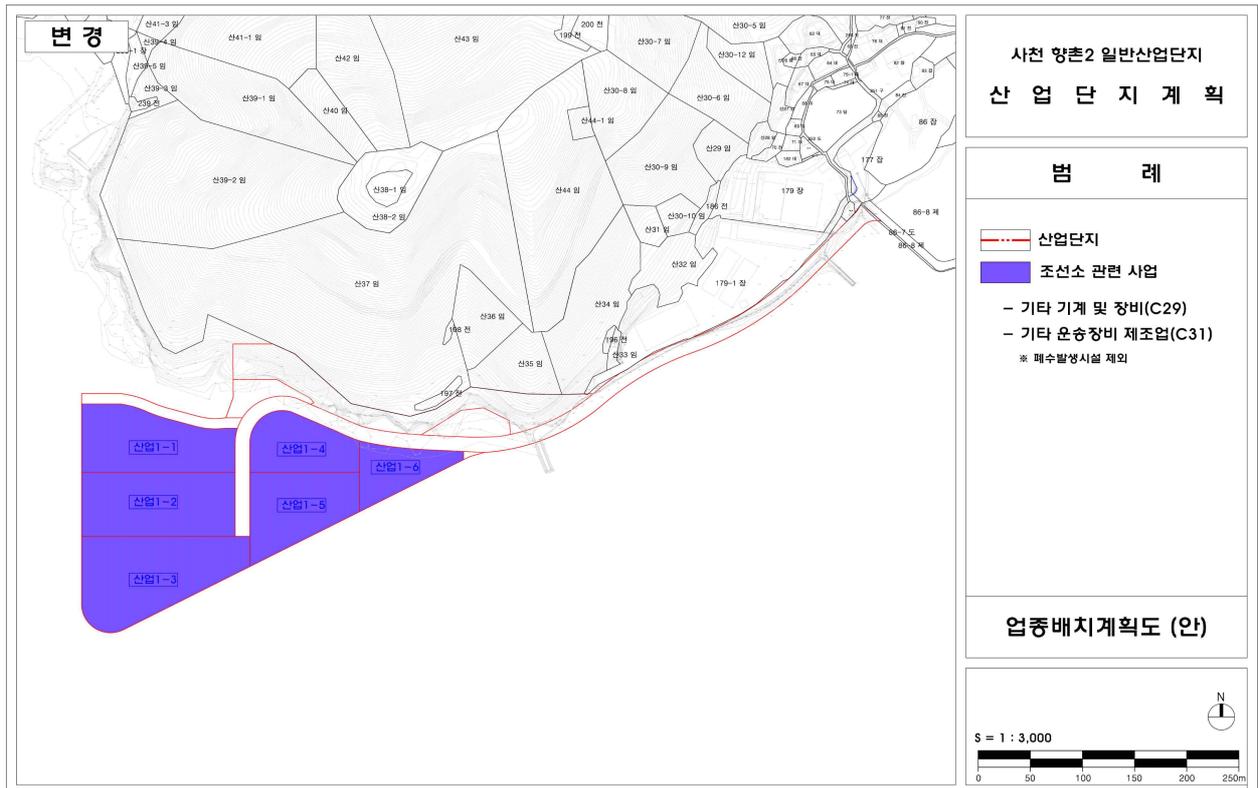
사천 시 공 보

제 692 호

별첨 1) 용도구역별 평면도



별첨 2) 업종별 공장배치계획도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사천시 공고 제2020-1247호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사천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시행하는 『각산일원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공정하고 투명한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0. 10. 15.

사 천 시 장

1. 모집기간: 2020. 10. 15.(목) ~ 10. 29.(목) 18:00까지
2. 모집분야: 관광·건축·도시·조경(시설물)분야 전문가 및 7급 이상 공무원
3. 모집인원: 21명 이상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최소 7명의 3배수 이상)
 - 가.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자 추천에 의해 최소 11명 (위원 7명, 예비위원 4명)
 - 나. 신청자가 21명 이상인 경우 직종을 안배하여 관련분야 학식·근무경력·특수성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 예정
4. 자격조건 및 제외대상
 - 가. 자격조건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사천시 소속공무원 제외)
 -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자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4) 해당분야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제외대상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평가위원의 제외대상인 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신청서 접수 후 제안사와 관련있는 경우 제외

5. 평가위원의 회피: 제척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과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의 경력 사항란에 경력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6.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0. 10. 15.(목) ~ 10. 29.(목) 18:00까지

나. 접수방법: 공문, 우편,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homk0213@korea.kr)

다. 접수처: 시천시청 문화관광국 관광진흥과

※ 이메일 제출 시 제출서류 서명날인 후 스캔하여 전송

※ 우편 접수 시 제출기한까지 관광과(접수처) 배송완료 시 적용

라. 제출서류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붙임 1)

2) 평가위원 서약서(붙임 2)

3) 평가위원(후보자) 보안각서(붙임 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 4)

5) 증빙서류표지 및 이하 증빙서류(붙임 5)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참여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 보안각서, 동의서에 자필 서명 후 제출

7. 평가위원 선정

가. 일 시: 2020. 11. 05.(목) ※ 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나. 선정인원: 11명 (평가위원 7명과 결원대비 예비위원 4명 추가선정)

다. 선정방법

- 1)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추천
- 2)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업체별 7명씩 추천
- 3) 선정순서 : ①다빈도 ②고령자 순서
- 4) 3배수 이상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 부여 후 입찰참가자 번호를 추천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
- 5) 신청자가 21명 이상인 경우 직종을 안배하여 관련분야 학식·근무경력·특수성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 예정

라. 선정통보 : 선정된 위원에게 유선으로 개별 연락

8. 제안서 평가 예정일 및 장소일시(※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시 개별통보)

가. 일 시 : 2020. 11. 12.(목) 14:00

나. 장 소 : 사천시청 2층 중회의실

9.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

- 1)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완료시 해촉된 것으로 봅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활용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 다. 신청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 라. 평가위원 수당지급 기준에 의거 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 마.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사천시 관광진흥과(☎055-831-2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상기 일정은 사천시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양식(붙임1 ~ 5) 각1부. 끝.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붙임 1]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 08. .

작성자 : (인)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붙임 2]

평 가 위 원 서 약 서

본인은 『각산일원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위촉되는데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지 아니합니다.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없습니다.
4. 제안서 및 평가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5. 제안서 평가에 공정하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2020년 월 일

평가위원 후보자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붙임 3]

평가위원(후보자) 보안각서

본인은 사천시 『각산일원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후보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회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 정보 등 모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 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0. . .

서약자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 692 호

[붙임 5]

「각산일원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증빙서류

○ **관련분야** : 관광, 도시계획, 공간 디자인, 건축, 도시재생 등

○ **증빙서류(목록기재)**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사 천 시 공 보

제 692 호

사천시 공고 제2020-1254호

먹는물공동시설(중탑·봉명산약수터)폐쇄 안내 공고

2020. 10. 15.

사 천 시 장

「먹는물 관리법」 및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요령」에 따라 수질오염(먹는물 수질기준 초과) 등으로 음용 시 건강상 위험이 예상되는 먹는물 공동시설을 아래와 같이 폐쇄 공고합니다.

1. 폐쇄시설(2개소)

시설명	중탑약수터	봉명산약수터
위치	축동면 탑리 676-7	곤명면 용산리 산 15

2. 폐쇄사유

- 중탑약수터: 지속적인 수질부적합판정(대장균, 총대장균군검출)
- 봉명산약수터: 잦은 시설고장 및 수원부족

3. 폐쇄근거: 「먹는물 관리법」 제8조 및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

4. 폐쇄예정일자: 2020. 10. 20

- 시설철거 예정: 2020. 11월 이후

5. 문의처: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 운영지원팀(055-831-5540)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공고 제 24 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③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08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



1. 사업 목적 : 농업용수, 수자원확보, 재해예방, 안정적 저수용량 확보
2. 사업 명 : 자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3.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일원
4. 사업시행면적 : 수혜면적 45.0ha(보강:44.0ha, 기설:1.0ha)
5. 사업 개요
 - 중방이 저수지 1개소 보강
 - 제 당 : L=133.0m, B=3.5m, H=8.5m
 - 여수토방수로 : L=41.0m, B=2.0m
 - 취수시설 : 사통(D300) N=2공, 복통(D800) L=30.0m
 - 이설도로 : B=3.0m, L=253.0m
6. 총 사업비 : 3,100백만원
7. 사업기간 : 2020. 12. ~ 2024. 12.(예정)
8. 시행계획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지역개발부(☎055-851-8141)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사천시 공고 제2020-1244호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사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상품권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안 제 3조 및 제4조)
-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대행단체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가맹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상품권 사용 제한 조항 삭제 및 가맹점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9조의2)
- 환전 및 대금의 지급,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제13조)
- 예산지원 조항 삭제(안 제14조)
- 할인판매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올바른 약칭 사용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068, FAX : 831-6031

사 천 시 공 보

제 692 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사천사랑상품권의 발행·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행점”을 “판매대행점”으로, “계약”을 “협약”으로, “금융기관을”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시장이 지정하는”을 “시장에게 등록한”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상품권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관내 금융기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관에 대항 하계”를 “판매대항점에 대항하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가맹점으로 구성된 단체”를 “대항단체”로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상품권을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등) ① 상품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이상품권

2. 카드상품권

3. 모바일상품권

②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으로 한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상품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권면금액 및 사용지역

2. 유효기간 및 발행인

3. 그 밖에 상품권의 유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품권에 대해서 발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제5조 중 “사천시” 를 “사천시(이하 “시” 라 한다)” 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시장은 제3조제4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판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및 수수료

2. 협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약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 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매월 말 기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판매 대장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3조제4항에 따른 대행단체는” 을 “제3조제5항에 따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대행단체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행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를 “대행단체의 의무 및 협조사항” 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제8조(가맹점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 중인 업소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 시장은 가맹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방법은 제2항과 같다.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제9조를 삭제한다.

제9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등록 취소일 부터 10일 이내 그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환전 및 대금의 지급) 가맹점이 환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고, 판매대행점은 회수한 상품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가맹점에 대금청구 금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공고 또는 계약 체결, 행사·민간보조금 지급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각종 포상금·수당 등” 을 “포상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대행점, 대행단체, 가맹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은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할일판매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권면금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상품권 할인 판매액은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구매한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을 판매대행점에 보전한다.

④ 시장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대행점” 을 “판매대행점”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한 영 <u>세소상공인 보호, 전통시장 활성화 등</u> <u>지역경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u> <u>자금의 지역 내 순환촉진 등을 통한</u> <u>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천사랑상</u> <u>품권 발행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u> <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사랑상품</u> <u>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u>」 및 같 <u>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u> <u>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사천사</u> <u>랑상품권의 발행·운용 등에 필요한</u> <u>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조(정의) ----- -----.</p>
<p>1. "사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이란 <u>시장</u>이 발행한 상품권으로 써 이를 소지한 자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아 일 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 을 말한다.</p>	<p>1. ----- ----- <u>사천시장(이하 "시장"이</u> <u>라 한다)</u>----- ----- -----.</p>
<p>2. "<u>대행점</u>"이란 시장과 <u>계약</u>을 체결하 여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 를 대행하는 <u>금융기관</u>을 말한다.</p>	<p>2. <u>판매대행점</u>----- <u>협약</u>----- ----- ----- 「<u>전자금융거래법</u>」 제 <u>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u> <u>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u> -- -----.</p>
<p>3.(생략)</p>	<p>3. (현행과 같음)</p>
<p>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물품 및 용역 의 대가로 받을 수 있도록 <u>시장</u>이 <u>지</u> <u>정하는</u> 업소를 말한다.</p>	<p>4. ----- ----- <u>시장에게</u> <u>등록한</u> -----.</p>
<p>5. (생략)</p>	<p>5. (현행과 같음)</p>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제3조(발행 및 판매) ① ~ ② (생략)
〈신설〉

③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 액면 가액 및 발행 금액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품권에 대해서 발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조(발행 및 판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상품권을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품권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 판매대행점에 대행하게 -----
-----.

⑤ -----

----- 대행단체 -----
-----.

제4조(상품권의 종류 등) ① 상품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이상품권
2. 카드상품권
3. 모바일상품권

②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으로 한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상품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권면금액 및 사용지역
2. 유효기간 및 발행인

사 천 시 공 보

제 692 호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사천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대행점 지정 및 관리) ① 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대행점을 지정할 경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수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 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금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그 밖에 상품권의 유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

⑤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품권에 대해서 발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유통지역) -----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

--.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시장은 제3조제4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판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및 수수료
2. 협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약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 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매월 말 기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판매 대장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제7조(대행단체 준수사항) ① 제3조제4항에 따른 대행단체는 상품권의 판매 확대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가맹점 준수사항 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대행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8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시장은 사천시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대행단체 준수사항) ① 제3조제5항에 따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대행단체는 -----

② (생략)

③ 대행단체의 의무 및 협조사항 -----

제8조(가맹점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 중인 업소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 시장은 가맹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방법은 제2항과 같다.

<삭 제>

제9조(상품권 사용 제한 등) ① 예산의 지원을 받아 판매된 상품권은 그 사용 대상(가맹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 사용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법인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대규모점포 등을 말한다.

③ 그 밖에 상품권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업종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신 설>

제12조(대금의 지급) 가맹점이 환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행점은 회수한 상품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생략)

- ②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공고 또는 계약 체결, 행사·민간보조금 지급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각종 포상금·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대행점, 가맹점,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2(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등록 취소일부터 10일 이내 그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환전 및 대금의 지급) 가맹점이 환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고, 판매대행점은 회수한 상품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가맹점에 대금청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현행과 같음)

② -----
----- 포상금 -----
-----.

③ 시장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대행점, 대행단체, 가맹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제14조(예산지원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 할인판매 및 상품권 구매자 포인트 적립
2. 상품권 경품행사 및 상품권 구매자 경품 제공
3. 판매대행점 및 사용업소의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
4. 그 밖에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할인판매 등 제공) ① 상품권 할인판매, 경품지급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② 인센티브 제공방법은 상품권 대행점에서 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하여 판매한다.

③ 상품권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은 시에서 보전하며, 대행점과 협의하여 지급한다.

제14조(예산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제15조(할인판매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상품권 할인 판매액은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구매한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을 판매대행점에 보전한다.

④ 시장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제17조(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생략)

② 담당공무원은 대행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대행점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7조(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판매대행점 -----
----- 판매대행점 -----
----- .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별지 제1호서식]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 청 인	상 호		업종 및 취급품목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	
	사 업 소 소재지			
	주 소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스티커교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별지 제2호서식]

사천 - 호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증

○ 상 호 :

○ 소 재 지 :

○ 성 명 :

○ 생년월일 : (남, 여)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별지 제5호서식]

사천사랑상품권 판매 대장

1. 사천사랑상품권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인 수 내 역		판 매 내 역		보 유 내 역	
	건 수	발행액	건 수	판매액	건 수	보유액
계						
5,000원권						
10,000원권						
50,000원권						

2. 사천사랑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천원)

환전액	미환전액	이자발생액	통장잔액	비 고

※ 첨부 :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6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사랑상품권 판매 대장을 작성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명칭:

성명:

(인)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별지 제6호서식]

사천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상품권 종류	수량(매)	금액(천원)	비 고
계			
5,000원권			
10,000원권			
50,000원권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입 금 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	------	--

판매대행점 귀하

사천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	수량(매)	금액(천원)	비 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관 련 법 규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692호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